

청주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54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5496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소5336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항소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은

변론종결 2022. 5. 19.

판결선고 2022. 6. 16.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소533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9. 12. 21.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전 826㎡ 중 별지 감정도 2, 3, 4, 26, 27, 28, 29, 30, 31, 32, 33, 15, 16, 17, 18, 25, 24, 2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8㎡ 및 별지 감정도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내지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1,1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C 소유의 단층 기와주택이 있고’ 부분을, ‘청주시 흥덕구 B 전 826㎡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상에는 C 소유의 단층 기와주택이 있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C는’ 부분을, ‘청주시 흥덕구 B 전 826㎡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C는’으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조희정, 판사 성찬용

별지